

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
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연월일 : 2023. . .
제출자 : 구미시장

1. 제안이유

가. 온실가스 감축 및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전기차 보조금 지원으로
전기차 보급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

나. 전기차 충전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고, 보다 많은 시민이
이용할 수 있는 공공 충전시설 필요함

다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2에
따라 공공건물은 2023. 1. 28.까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
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화

※ 「주차장법」에 따른 주차단위구획의 총 수가 50개 이상인 시설에만 해당

(근거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18조의5)

라. 현재 총 주차대수 19대로 설치 의무 공공건물에는 해당하지 않으나, 향후
인근에 추가 건립 예정인 탄소소재 연구인프라*를 고려하고 예상되는 전기차
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공공시설 내 전기차 충전기를 설치하고자 함

* 인조흑연 테스트베드 센터, 방산항공우주용 탄소소재부품 랩팩토리 센터

※ 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
기관명	역할 및 업무분담 내역
구미시	부지 제공(공유재산 유상허가)
(재)경북하이브리드 부품연구원 * 경북도 출연기관	충전기 설치비용 및 유지보수비 100% 부담 (기관 자체예산)
민간운영사업자	충전기 설치 및 운영, 공유재산 사용료 납부

마.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11조의3제 2항 및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」 제7조 제5항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예치 등의 조건으로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*을 축조할 경우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므로, 본 안건을 상정합니다.

* 영구시설물 : 공유지에 고착되어 이동할 수 없는 시설(주차장, 수소충전소 등)

※ 근거 : 국유재산법 제18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의2 제1항 제1호 마목

2. 주요내용

가. 사업개요

- 1) 사업명 :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
- 2) 기간 : 2023. 12월
- 3) 위치 : 경북 구미시 산동읍 5공단7로 8
(경북하이브리드부품연구원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)
- 4) 주요시설 : 완속 충전기 7kw 2기

나. 운영방법

- 1) 운영주체 : 민간운영사업자
- 2) 운영기간 : 공유재산 사용허가 승인 이후 10년(1회 연장 가능)
- 3) 운영범위 : 전기차 충전서비스 제공, 충전설비 유지보수 및 운영관리
- 4) 운영방안 : 개방적 운영(친환경자동차법 제11조의2 제11항)

다. 전기충전기 설치계획

- 1) 설치장소 : 산동읍 5공단7로 8, 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
- 2) 설치수량 : 충전기 2대(완속 2)

라. 향후 추진계획

- 1) 2023. 12월 :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 설치 동의
- 2) 2023. 12월 : 공유재산 사용허가 및 운영관리 협약
- 3) 2023. 12월 :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
- 4) 2023. 12월 : 공사 착수 및 설치 완료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붙임 참조

탄소성형부품상용화인증센터 전기차 충전기(영구시설물)

설치 동의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재정수반요인

-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으로 재정수반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구미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1항제2호
(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)

3. 미첨부 사유

- 재정수반 요인 없음

4. 작성자

- 신산업정책과 첨단소재부품팀 곽다은(054-480-6163)

관계법령

□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
2 ~ 4 생략, ② ~ ⑩ 생략

⑪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⑫ 생략

부칙

제2조(기축시설에 대한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기준의 적용 유예기간) 법률 제18323호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”이란 같은 법 시행일인 2022년 1월 28일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. 다만, 수전설비(受電設備)의 설치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최대 4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.

1. 제18조의5제1호에 해당하는 시설: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
가. 공공기축시설: 1년
나. 가목 외의 시설: 2년

제11조의3(국유재산·공유재산의 임대 등)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를 할 수 있다.

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에 따라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「국유재산법」 또는 「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」에도 불구하고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, 지방의회의 동의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. <개정 2021. 7. 27.>

③ 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 및 공유재산의 임대기간은 10년 이내로 하되, 국유재산은 종전의 임대기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갱신할 수 있고,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10년 이내의 기간에서 연장할 수 있다.

□ 「구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」

제7조(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에 대한 지원)

① 생략

② 시장은 민간의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설치·운영에 대한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및 기술지원, 공유재산 사용·수익허가 또는 대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③ 제2항에 따라 공유재산 대부계약의 체결 또는 사용·수익허가(이하 “임대”라 한다)하는 경우에는 「구미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」에 따른다.

④ 시장은 법 제11조의3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충전시설의 설치·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충전시설 보급·확대 사업을 하는 자에게 임대할 수 있다.

⑤ 시장이 제3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임대하는 경우에는 자진철거 또는 철거비용의 공탁을 조건으로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. 다만,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면 구미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소 관 부 서		신산업정책과
입 안 자	과 장	조 영 열
	팀 장	이 종 은
	담 당 자	곽 다 은 (480-6163)